

#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3005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12월 21일  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전부개정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,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의 조례 제정·개정 및 폐지 청구를 규정함(안 제18조제5항 신설).
- 나. 주민조례청구 관련 이의신청 등은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(안 제18조의2 신설).
- 다. 기록표결 원칙에 관해 규정함(안 제43조)
- 라.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(안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 신설)
- 마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 현행화 및 기타 미비점을 보완함(안 제1조 등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과 같은 법 시행령,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1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”로 한다.

제11조 전단 중 “의장이 각 대표의원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(이하 “대표의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법 제63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본문 중 “시장·교육감·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·제안하거나 발의한다”를 “의원이 발의하거나 시장·교육감·위원회가 제출·제안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법 제19조 및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주민조례발안법”이라 한다) 등에 따라 주민은 조례를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의회에 청구(이하 “주민조례청구”라 한다)할 수 있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)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「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주민발안 조례”라 한다)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심의를 거친 후 의장 명의로 발의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는 제19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은 주민발안 조례에 따른다.

제40조제1항 중 “선포하여야”를 “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”로 한다.

제43조제1항 중 “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할 수 있으며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할 수 있다.”를 “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및 기타 방법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,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”을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4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.

제43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45조 중 “선포한다”를 “의장석에서 선포한다”로 한다.

제49조제1항 본문 중 “일반”을 “주민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”를 “법 제84조제4항”으로, “게재되지”를 “공개되지”로 한다.

제84조제1항 본문 중 “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」(이하 “윤리강령 조례”라 한다)”로, “법 제86조”를 “법 제98조”로, ““윤리특별위원회”를 구성하여”를 “윤리특별위원회에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」 제14조제2항”을 “윤리강령 조례 제14조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법 제83조”를 “법 제95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”로 한다.

제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」”를 “윤리강령 조례”로 한다.

제89조를 제94조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89조) 중 “법 제71조”를 “법 제83조”로 하며,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9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)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강령 조례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

제90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) 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(이하 “행동강령 조례”라 한다)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할 수 있다.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.

제91조(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 등)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2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제92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업무 및 운영) 제90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할

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 조례를 준용한다.

제93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)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.

제89조 앞에 “제10장 보칙”을 삭제한다.

제94조 앞에 “제10장 보칙”을 삽입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11조(개의) 본회의는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.</p> <p>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생략)</p> <p>②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·교육감·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제11조(개의) ----- ----- 서울특별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(이하 “대표의원”이라 한다)----.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2조제1항----- ---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----- 의원이 발의하거나 시장·교육감·위</p>



출 · 제안하거나 발의한다.다만, 의원은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② ~ ④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원회가 제출·제안한다. <단서 삭제>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법 제19조 및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주민조례발안법”이라 한다) 등에 따라 주민은 조례를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의회에 청구(이하 “주민조례청구”라 한다)할 수 있다.

제18조의2(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)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「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주민발안조례”라 한다)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심의를 거친 후 의장 명의로 발의된 주민청구조례

제40조(표결의 선포) ① 표결할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43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경우에는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할 수 있으며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할 수 있다.

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,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 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

안의 심사절차는 제19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은 주민발안 조례에 따른다.

제40조(표결의 선포) ① -----  
-----  
---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-.  
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3조(표결방법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및 기타 방법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-----  
-----  
-----

기명투표로 표결한다.

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.

<단서 신설>

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 투표로 한다.

제45조(표결결과선포)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.

제49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

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다만,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----.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.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제45조(표결결과선포) -----  
----- 의장석에서 선포한다.

제49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

① -----  
----- 주민-----  
----- . <단서 삭제>

②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·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~ ⑥ (생략)

제84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의장은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(이하 “윤리심사대상자”라 한다)또는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(이하 “징계대상자”라 한다)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“윤리특별위원회”를 구성하여 회부한다. 다만,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고를 2회 받은 의원은 징계대상자가 된다.

② (생략)

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의

② ----- 법 제84조제4항 -----  
----- 공개되지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84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-----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」 (이하 “윤리강령 조례”라 한다) -----  
----- 법 제98조 -----  
----- 윤리특별위원회에 -----.  
-- 윤리강령 조례 제14조제2항 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.

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83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

④ ~ ⑥ (생략)

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60조제1항제7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.

제84조의2(특정 현안 또는 사안에 대한 조사)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」 준수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특정한 현안 또는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 법 제95조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  
----- 의원이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84조의2(특정 현안 또는 사안에 대한 조사) -----  
----- 윤리강령 조례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89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)

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강령 조  
례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 
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  
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 
를 둔다.

제90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

및 임기) 법 제130조제4항에 따  
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 
장과 위원은 각각 「서울특별시  
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(이  
하 “행동강령 조례”라 한다) 제  
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  
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할  
수 있다.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  
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행동강  
령 조례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  
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.

제91조(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

등)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 
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
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 
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

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 
우

2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<신 설>

제92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업무 및 운영) 제90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 조례를 준용한다.

<신 설>

제93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)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

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 전에 윤리  
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 
하며,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.

<삭 제>

제10장 보칙

제10장 보칙

<신 설>

제89조(규정등 제정) 의장은 법  
제71조에 따라 이 규칙 이외에  
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 
범위에서 의회 및 사무처 운영  
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 
있다.

제94조(규정등 제정) ----- 법 제  
83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